

[별표 3] <개정 2001.7.16, 2006.6.30>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등의 인력기준(제196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기 준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취득자 1인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외에 사용하는 경우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기기에 장비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2) 기기에 장비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미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3)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4)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1.85기가베크렐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1.85기가베크렐 미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다. 방사선발생장치	
(1) 1메가전자볼트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2)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1대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3)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 밀리암페어 2대 이상 (4) (2) 및 (3)에서 정한 각각의 전압·용량 및 수량이 동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3. 일시적 사용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4.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판매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나. 방사성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업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